

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심기보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1년 1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○ 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2015년 8월 11일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려 함.

○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관계법령 정비(안 제1조)

- 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3항제3호·제4호
→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

-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·제37조 →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·제38조

- 관계법령 정비(안 제3조제1항)
 -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조제1항 →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

-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존속기한 표시 (안 제3조제2항)
 -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.

-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회의일정 통지 신설(안 제9조 제5항)

- 관계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12조)
 - 민원조정실무심의회 → 민원실무심의회
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 - 안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9조

5. 검토의견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2015년 8월 11일에 전부개정되고 2016년 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명칭이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,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,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관계법령을 정비하였고,
- 안 제3조제2항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표시 하였으며,
- 안 제9조제5항에서는 위원회 개최시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통지 조항을 신설하였고,
- 안 제12조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용어를(민원조정실무 심의회 → 민원실무위원회) 정비하였으며,
- 안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9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음

-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을 정비하였고,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 임: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